

2. 시장법 ('86. 12. 31 폐지)과 도·소매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비교

시장법	도·소매업 진흥법																
<p>○ 용어의 정의(法第2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라 함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말한다. "상설시장"이라 함은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 구역안의 하나의 건물(지하도에 부설된 시설을 포함한다)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을 매매·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연쇄화 사업"이라 함은 직영점포의 개설 또는 다른 수의 소매상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p>○ 용어의 정의(法 第2條)</p> <p>시장, 정기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연쇄화사업, 상점가, 할부판매, 채무보증할부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방화정보 제44호 16페이지를 참조바람.</p>																
<p>○ 적용배제(法第3條)</p> <p>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 협동조합법 및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공판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p>	<p>○ 소규모 점포의 기준(슈 第3條)</p> <p>法 第2條 第1號에서 시장이라 함은 점포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가 전체점포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p>																
<p>○ 상설시장 개설자의 자기 소유건물등의 기준(슈4條)</p> <p>허가조건에 의한 자기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 개설허가 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p>	<p>○ 상점가의 범위(슈 第4條)</p> <p>法 第2條 第6號의 상점가의 범위는 점포수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점포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0점포이상을 말한다.</p>																
<p>○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슈8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350㎡이상이어야 한다. 	<p>○ 적용배제(法 第5條)</p> <p>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 협동조합법 및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과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매장면적의 기준(슈 第7條)</p> <p>法 第4條 제1항에서 "영업장의 면적(이하"매장면적"이라 한다)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인 모든 영업장"이라 함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이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을 말한다.</p> <p>* 規則 第6條(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 참조</p>																
<p>[별표1] 상설시장의 업태별종류·내용 및 영업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능별</th><th>업태별 종류</th><th>내 용</th><th>영업자수</th></tr> </thead> <tbody> <tr> <td>도 매</td><td>도 매 시 장</td><td>주로 최종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시장</td><td>10인 이상</td></tr> <tr> <td>소 매</td><td>1. 일반 소 매 시 장</td><td>주택가시장·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td><td>10인 이상</td></tr> <tr> <td></td><td>2. 백화점</td><td>각종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td><td>1인 이상</td></tr> </tbody> </table>		기능별	업태별 종류	내 용	영업자수	도 매	도 매 시 장	주로 최종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시장	10인 이상	소 매	1. 일반 소 매 시 장	주택가시장·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10인 이상		2. 백화점	각종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1인 이상
기능별	업태별 종류	내 용	영업자수														
도 매	도 매 시 장	주로 최종소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시장	10인 이상														
소 매	1. 일반 소 매 시 장	주택가시장·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10인 이상														
	2. 백화점	각종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1인 이상														
<p>[별표1]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th>내 용</th></tr> </thead> <tbody> <tr> <td>백화점</td><td>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td></tr> <tr> <td>쇼핑센터</td><td>백화점·수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td></tr> <tr> <td>대형점</td><td>대중종합점·영매점·수퍼마켓·전문점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의 규모가 별표2의 매장면적이상인 대형소매점</td></tr> </tbody> </table>		종 류	내 용	백화점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쇼핑센터	백화점·수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	대형점	대중종합점·영매점·수퍼마켓·전문점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의 규모가 별표2의 매장면적이상인 대형소매점								
종 류	내 용																
백화점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쇼핑센터	백화점·수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																
대형점	대중종합점·영매점·수퍼마켓·전문점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의 규모가 별표2의 매장면적이상인 대형소매점																

3. 쇼핑 센터	백화점·수퍼마켓 등 핵 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레저시설·공공시설 등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하고 직영 또는 임대로 운영되는 소매업의 집단	1인 이상
4. 대형 점	대중종합점(G.M.S)·염매점(D.S)·수퍼마켓·전문점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가 별표 2의 건물면적 이상인 대형소매점	1인 이상

[별표 2] 상설시장의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업태별 종류	건물 면적(연면적)	매장 면적	시 설
1. 도매 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 면적의 60% 이상	가. 유용물시설(전기, 급배수 시설)
2. 일반 소매 시장	1천500 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면적의 60% 이상	나. 소비자보호시설(상담실·소비자휴게소·자유계약대·공중전화등)
3. 백화점	5천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은 3천5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면적의 60% 이상	다. 점포기본시설(샵타·점포의 내장·간판·표지물·홍보판 등)
4. 쇼핑 센터	1만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면적의 60% 이상	라. 위생시설(수세식화장실·오물수거장·공동작업장 등)
5. 대형 점	1천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면적의 60% 이상	

[별표2] 대규모소매점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등

종 류	매장면적(㎡)	운 영 체 제	시설기준(공통)
백화점	서울특별시외 경우는 3,000이상 기타 지역 경우는 2,000이상 이상	매장 면적의 50% 이상직영. 상시 종업원의 5% 이상 판매사 고용	1. 점포기본시설(상품) 2. 상·하수도시설 3. 전기시설 4. 주차시설 5. 위생시설(충전남녀구분 수세식화장실·오물수거장·공동작업장 등)
쇼핑 센터	서울특별시외 경우는 3,000이상 기타지역의 경우는 2,000이상 이상	임차건물의 경우는 30% 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 이상 판매사 고용	6. 집중 냉·난방시설(충전별냉·난방시설을 포함) 7. 방송시설 8. 관리사무실 9. 문화행사시설(대형점의 경우는 제외) 10. 소비자보호시설(상담실·휴게소·자유계약대·공중전화 등)
대형점	서울특별시외 경우는 1,000이상 기타지역의 경우는 700이상 이상	매장 면적의 50% 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 이상 판매사 고용	

[별표3] 도매센타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등

구 분	기 준
매장 면적	3,000㎡ 이상
운영체제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10% 이상 직영
시 설	상시 종업원의 5% 이상 판매사 고용 1. 점포기본시설 2. 종합전시장 3. 하역시설 4. 보관시설(별도의 건물로 할수 있다. 5. 전산시설 6. 주차시설 7. 부대시설(식당·휴게소·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화장실 등) 8. 관리사무실